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따라 기존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조문을 신설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허용함

-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 조정(안 제26조제2항
개정)
-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기간을 인증·지정된 유효
기간(최대 6년)으로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30. ~ 8.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
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
약을 허용하고, 「조달사업법」 개정·시행에 맞춰 ‘혁신제품’과 관련된
수의계약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안 제26조제1항제5호아목 신설,
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사·선정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허용함
- 나.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조문 정비(안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삭제,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 개정)
- 「조달사업법」이 개정·시행(10.1)되어 혁신제품 정의가 신설됨에

- 1 -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사하여 선
정한 디지털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제26조제2항 본문 중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을 “유효기간(주무
부장관이)”로,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을 “지정된 유효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를 “사목 및 아목, 제27조”로 한다.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3. ----- ----- -----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삭 제>
자. (생략)	자.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5. ----- -----

비추어 정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가. ~ 바. (생략)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경우 <신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전문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계약하는 경우 ② ----- ----- ----- ----- -----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3. (생략) ② ~ ⑦ (생략)	-----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 -- .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 ----- -----, ----- ----- ----- . 1. ----- ----- 사목 및 아목, 제27조 2.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2